

2025년도 국제공동연구 신속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 신속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1 사업 개요

□ 신속지원사업 추진 목적

- 글로벌 기술환경의 빠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글로벌 R&D 이슈에 신속히 대응(초기 골든타임 확보)하여 핵심기술 선점 기여

□ 연구과제 세부 추진 개요

- (연구과제명) 美 에너지부(DOE) DUNE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탐색 연구
- 과제 목표
 - 美 DUNE 프로젝트 내 핵심기술개발에 참여로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내적으로 합의된 추진 기반 마련

< 연구과제 주요 내용 >

- ① 핵심기술 타당성 검증 / ② 한국의 DUNE 프로젝트 참여 전략 도출 / ③국제협력 기반 구축
 ※ 연구 범위 및 일정 등 세부 사항은 2p의 '연구과제 세부 내용' 확인

○ 지원기간/규모

선정 과제 수	총 1과제 이내
연구비	400백만원
연구기간	13개월(2025.12.1. ~ 2026.12.31.)

※ 연구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 총액이며, 간접비는 고시율에 따라 계상

□ [중요] 연구과제 세부내용

① 핵심기술 개발 타당성 검증 (R&D)

- (프로젝트 참여 목표설정) DUNE 프로젝트 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기술 제시, 분석, 과학기술적 목표 설정
 - 핵심기술에 대한 정의, 해당기술 선정기준 및 전략적 중요성 필수 제시
- (사전 R&D) 제시한 핵심기술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 R&D 수행으로 한국의 참여 여부, 범위, 규모 설정
 - 사전 R&D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추진계획 및 타당성 필수 제시

• (예시) 연구개발 추진계획 및 타당성 제시에 대한 예시

- ① 근검출기/원검출기에 대한 설치 및 보안 방안
- ② AI 등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및 성과 활용 방안 등

- (연구자 파견) 현지 시스템 파악 및 DUNE 프로젝트 연구진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최소 1인의 연구자 美 국립연구소 중장기 파견 추진
 - 연구기간 내 박사급 이상 연구자 최소 1명의 필수 파견(6개월 이상)

② 한국의 DUNE 프로젝트 참여 전략 도출

- (한국 DUNE 컨소시엄 구성) DUNE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연구기관의 '한국 DUNE 컨소시엄(KDC)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 (컨소시엄 구성 원칙) 연구자 포함 엔지니어팀 발굴 및 구성 필수
 - ※ 다학제간 연구팀 구성 권고
 - (운영방안 수립)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 워킹그룹 구성, 의사결정 구조 및 예산 분배 원칙 등 수립 및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워크숍 등) 필수 수행
- (전략 도출) 프로젝트 공식 참여를 위한 전체 사업 기간, 한국 참여 프로젝트 및 역할, 연차별 추진 내용, 예산 계획(연차별·비목별) 수립, 참여인력* 등 도출

* 참여인력의 확보 방안, 신진연구자 인력양성 방안을 포함한 참여 계획 수립 등

- (정부간 합의문서 초안 도출) 한국 정부 및 연구기관의 기여 내용과 범위(기여도 등)에 관한 정부 간 합의문서* 초안 등 도출

* 과기정통부-DOE 간 SOI(Statement of Interest)등 도출을 위해 부처와 지속적 소통 필수

- (유사 프로젝트 분석) 일본의 Super·Hyper-Kamiokande 등 유사 프로젝트와의 차별성 및 DUNE 참여의 기대성과 분석

※ T2K(일본), ICARUS(이탈리아), JUNO(중국), KM3NeT(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 (협력 확대방안 모색) DUNE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협력분야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제시

③ 국제협력 기반 구축

- (협의 채널 구축) DUNE 협력체 및 페르미국립연구소(FNAL)와의 공식 협의 채널 구축 및 운영하여 RRB(Resources Review Board) 등 참여
- (네트워킹 및 공동행사 개최) 국내외 관련분야 연구진들과 페르미국립연구소(FNAL)와 지속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주요 제반활동(워크숍 등) 수행

□ [중요] 연구과제 세부내용 추진 일정

- 정부 정책의 신속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함

추진 일정	세부 추진 내용
~ 2026.2월	한국 DUNE 컨소시엄(KDC) 구성 완료
~ 2026.3월	DUNE 국제협력사업 기획보고서 초안 도출
2026.3월 ~	DUNE 협의를 위한 참여연구진의 페르미연구소 중장기 파견 ※ 상대국 연구기관 협의 내용에 따라 파견 시점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진 일정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선정 후 부처 및 전문기관과 사전 논의 필요
- 연구과제 세부내용 추진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소관 부서 및 전문기관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필요

2

신청자격 및 제한

□ 과제구성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
 - ※ 상법에 따른 회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음
 - ※ 연구 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 1개 이상의 기관을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총연구비의 40% 이상을 편성할 수 없음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업무위탁 불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를 위탁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주요 차이점

구분	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수행제한(3책5공)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직접비*의 40%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있음	없음

* 위탁연구비, 국제공동연구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주관연구기관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제한

○ 유사과제 신청 제한

- 동일한 내용 및 주제로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 지양
- 기수행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검토 후 지원하여야 함
 -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과제신청 완료 후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http://www.ntis.go.kr>에서 확인 가능)

○ 중복 신청 제한

- 본 사업 내,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자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적용(3책 5공)

- 본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3책 5공)의 적용을 받으며, 기준 완화(4책 6공)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중요]신청 기간

구 분	세부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25.10.15.(수) ~ '25.11.13.(목) 17시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승인 신청 완료

※ 11.13(목) 17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한 내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 권장(평일 기준)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주관기관에서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내용까지 일괄 제출

번호	제출서류	수량
[양식1]	▶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 내 작성요령 및 [붙임]을 숙지하여 <u>전체 30p 이내로 작성</u>	1부
[양식2]	▶ 첨부서류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필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기업 참여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1부
[양식3]	▶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과제 현황	1부

※ [양식2]의 첨부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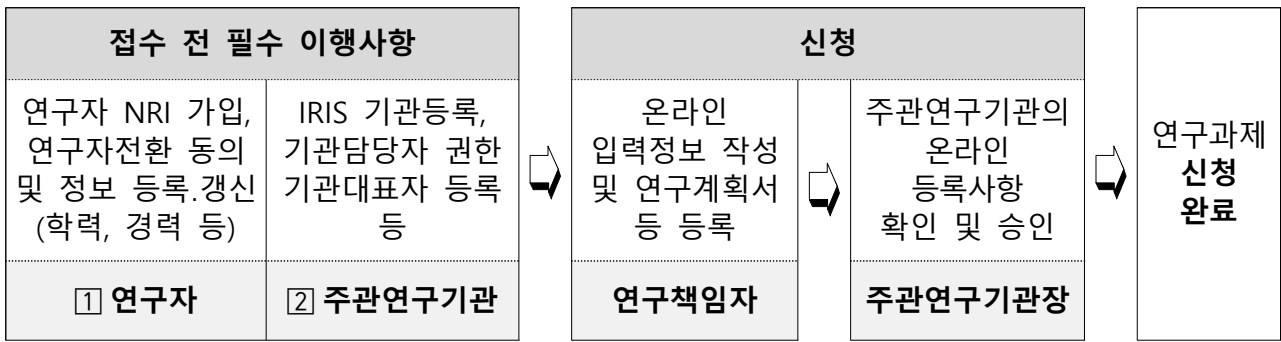
	과제신청서 접수	과제신청서 승인
제출처	IRIS 시스템	IRIS 시스템 주관기관 승인
기한	~ 11/13(목), 17시	~ 11/13(목), 17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추진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과제 접수 매뉴얼 확인처

IRIS 시스템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탈-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작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과제 신청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 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가능.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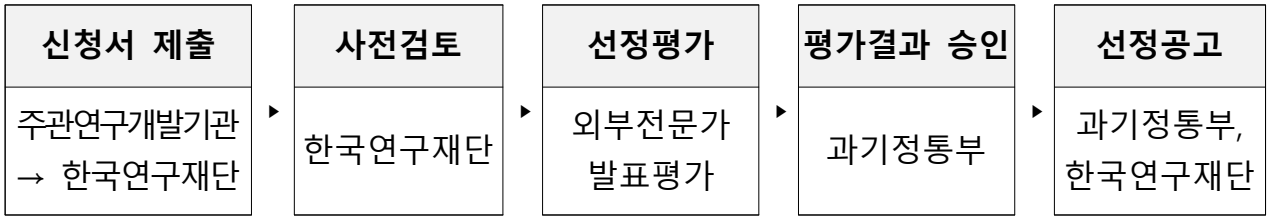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까지만 가능

- (권고) 과제 신청 시,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 및 '기초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를 각각 **2개 이상 선택**

4

선정절차 및 지표

□ 선정 절차



□ 평가지표(안)

- 연구계획의 목적 적합성, 구체성,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 개발 역량,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 평가지표는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중요]**연구개발계획서 작성/구성 방법 안내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①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30p이내로 작성하여 '과제접수용 연구개발 계획서(Part2(본문1))'에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수행 내용은 '연구과제 세부내용(p2)'의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작성

② 연구비 편성 및 관리 방법

- 예산편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 제시된 연구비 내 직접비와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접비는 간접비 고시율에 따라 계상

- 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방문 또는 학회 참석 등을 위해 국외출장 시, 출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
※ 단, 계획에 대한 사전 내부결재 및 출장 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제신청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공고 기간 연장, 재공고 또는 추가 공모할 수 있음
※ 단,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예외
※ 접수 완료 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가 선정 예정 과제 수 이하가 될 경우, 재공고 미 실시
-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USD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한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 사항은 미포함

6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 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관련법령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https://www.law.go.kr/>)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연구비 관리 매뉴얼은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http://gaia.go.kr>) 참조

• 「국가R&D연구비 관련 법·규정」

→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확인

□ 연구성과 등록 및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 성과등록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관리시스템(IRIS) 등록해야 하며, 필요시 연구 성과물을 실물로 제출해야 함

○ 논문 사사표기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 표기

▶ **국문표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사업 추진 일정

○ 2025.11월 말 선정평가(발표)

○ 2025.12월 초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반드시 공고문 확인 후 주관기관 과제 관리부서를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방법: E-mail 문의 후 해결이 안 된 경우 → 유선문의

※ E-mail 문의 시, 하단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 문의

① 지원하는 사업명: 국제공동연구 신속지원사업

② 소속/연구자성명/유선연락처

ex) 한국연구재단 / 김늘프 교수 / 010-1234-5678

③ 문의내용

○ 문의처

▶ IRIS 시스템 관련 : 고객센터 1877-2041

▶ 사업관련(이메일 문의) : 한국연구재단 미주아시아협력팀

- 윤지원 연구원 : E-mail jw9356@nrf.re.kr

- 홍연희 연구원 : E-mail yunhee@nrf.re.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이차연 사무관 : E-mail chayeon@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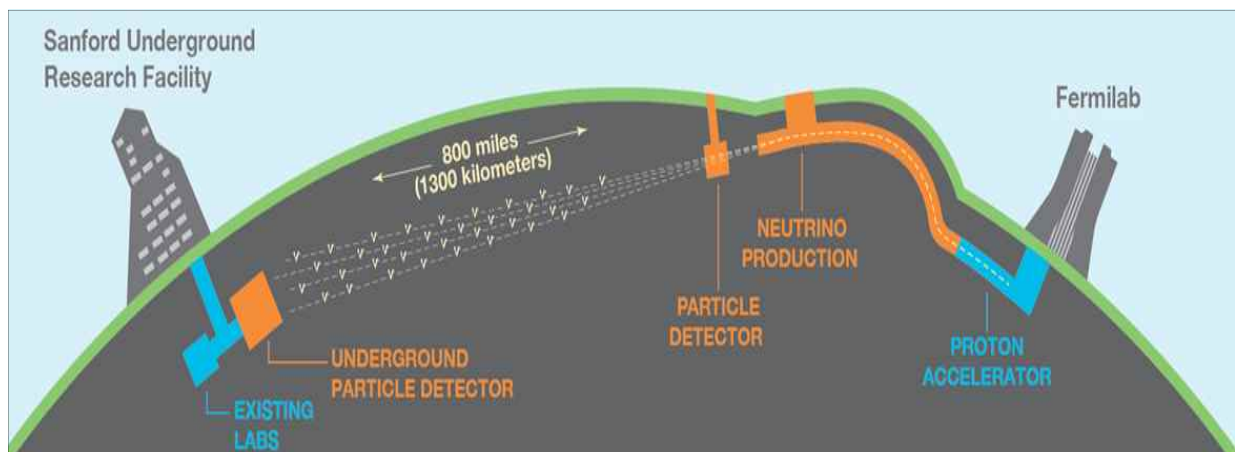
- 추은경 주무관 : E-mail chulove@korea.kr

□ 프로젝트 개요

- (개요) 美 에너지부(DOE) 주도로 추진되는 차세대 중성미자 실험을 위한 대형 국제협력 프로젝트('28년 가동 목표로 건설 중)
- (목표) 중성미자 변환*(Neutrino Oscillation) 연구, 양성자 붕괴 탐색, 초신성 중성미자 감지 등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 규명
 - * 중성미자는 3가지 유형(전자, 뮤온, 타우 중성미자)이 있고, 이동 중 서로 변환되는 성질 보유, 해당 성질을 정밀히 측정하여 물질-반물질 비대칭성의 단서를 찾는 것이 핵심
- (참여) 35개국 이상, 1,400명 이상의 과학자·엔지니어가 참여 중

□ 구성 및 실험 방식

- (중성미자 빔 생성) 페르미랩(FNAL)에서는 PIP-II라는 차세대 고출력 양성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중성미자 빔을 생성
- (근거리 검출기, 575m) 페르미랩(FNAL) 인근에 위치하여 중성미자 빔의 초기 특성을 측정, 액체 아르곤 시간 투영 검출기*(LArTPC)를 사용하여 중성미자와 다른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추적
 - * 입자가 액체 아르곤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이온화 전자를 추적하여 입자의 궤적 재구성
 - ※ 근거리 검출기의 데이터는 원거리 검출기에서의 데이터를 보정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
- (원거리 검출기, 1300km) Sanford 지하연구소(SURF) 1.5km 깊이에 설치된 액체 아르곤 검출기(총 4개, 40kton 용량 목표)로 중성미자 빔이 이동하며 변환되는 과정을 관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그 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나. 연구시설·장비비
-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geq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geq k \times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geq d \times 0.1$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